2015년 5월 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5월 3일(일) 06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# 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김대희 과장(042-481-4407), 박은주 사무관(4409)

##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담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개정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4일(월)에 **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(중소기업상담회사, 창업보육센터)의 행정처분기준** 등의 내용을 담은 **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**(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)이 **4월 28일(화)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, 5월 4일(월)부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**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시 **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를 우대**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**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기간 설정**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(5.4일 시행 등)된 **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의 후속조치**로서,

○ **39세 이하**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**우대**할 수 있도록 하였고,

○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, **1회 위반 시에는 경고,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,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**을 하도록 개정하였다.

□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**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**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,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**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되어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개정된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① 청년창업자 범위 설정(제 5조의4)

○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**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**로 한다.

* 그간 예산에 근거한 청년창업지원사업('11년~)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시니어창업지원사업은 40세 이상 창업자를 기준으로 지원

### ②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(제31조의3)

○ 창업지원법(제43조제3항·제4항)은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**법정사유*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취소**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

* 중소기업상담회사 : ① 거짓 등 방법으로 등록된 때, ② 등록요건 미비, ③ 회사책임으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,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

** 창업보육센터사업자 : ① 거짓 등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, ② 자금의 목적 외 사용, ③ 시설 등 목적 외 사용, ④운영실적 미흡할 때, ⑤ 등록요건 미비한 때

○ 개정된 시행령은 이러한 **법정사유에 해당하면 1차 경고, 2차 12개월 지원중단, 3차는 등록을 취소**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였다.

### ③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정비(제29조의2)

○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12종의 부담금 면제를 위해 **제조창업기업 여부를 확인** 할 때, 종전에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확인에

동의하지 않는 경우 **제출서류*에 국세(지방세)납세증명서가 포함**되어 있었다.

*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국세(지방세)납세증명서

○ 그러나 제조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**국세(지방세)납세증명서가 없이도 창업확인이 가능하여 제출서류 항목에서 삭제**하였다.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박은주 사무관(☎ 042-481-44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